

약관(일부)변경 내역

1. 투자신탁명칭

1. 신영신종 MMF 투자신탁 제 4-26 호
2. 신영신종 MMF 투자신탁 제 4-27 호

2. 약관개요

투자신탁명칭	설정일	설정잔고(2005.11.15)	수익자수
신영신종 MMF 투자신탁 제 4-26 호	2003.4.1	291 억	
신영신종 MMF 투자신탁 제 4-27 호	2003.4.15	3190 억	

3. 약관변경사유

- 추가설정을 위한 총좌수 한도 증가

4. 약관변경내용

해당조문	현 행	변 경(안)
제 22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1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당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	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 수익자의 경우 제 21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제 2 영업일(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시 제 3 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 영업일(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시 제 3 영업일)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
제 25 조(수익증권의 환매제한)	<p>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	<p>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(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 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의 변경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